

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4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의 관련 규정(제6조)을 정하고, 제7조(위원회 운영) 분과위원회,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 시 제6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조문 변경

2. 주요내용

가. 분과위원회,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(안 제7조제2항)

- 제7조의 규정을 준용 → 제6조의 규정을 준용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구조문대비표 붙임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분과위원회,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위원회 운영) ① (생 략)	제7조(위원회 운영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<u>분과위원회, 운영위원회 등 의 회의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.</u>	② <u>분과위원회, 운영위원회 등 의 회의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.</u>

소관 실·과		녹색정책담당관실
입 안 자	과 장	이 대 희
	담 당	박 경 자
	담 당 자	정 형 관 (480-6582)